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932

발의연월일: 2025. 4. 17.

발 의 자:김예지·장종태·김소희

조경태 · 정성국 · 서천호

고동진 • 박덕흠 • 김선교

최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 4천여 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구 10만명당 28.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살의 원인과 동기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및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경제·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살요인에 적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및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조사대상자의 소득, 직업, 건강 등의 특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자살 동기와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매년 3월을 '자살예방의 달'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여 자살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및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5년에서 3 년으로 단축함(안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 나.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 가족관계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과 자살자의 자살원인, 동기, 수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 다. 매년 3월을 자살예방의 달로 지정하고, 필요 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 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16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소득, 직업, 건강, 가족관계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
- 3. 자살자의 자살원인, 동기, 수단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제1항 중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를 "자살예방주간으로 하며, 매년 3월을 자살예방의 달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살예방의 날"을 "자살예방의 날(자살예방주간 및 자살예방의 달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사 외에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 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은 별도로 자살예방기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	①
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	
살예방기본계획(이하 "기본계	
획"이라 한다)을 <u>5년</u> 마다 수립	<u>3년</u>
하여야 한다.	<u>.</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국가 및	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	
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	
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u>5년</u> 마다 자살실태조사	<u>3년</u>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	②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2. 소득, 직업, 건강, 가족관계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u>사항</u>
<u><신 설></u>	3. 자살자의 자살원인, 동기, 수
	단 등에 관한 사항

<u>2.</u> ~ <u>4.</u> (생 략)

③ ~ ⑤ (생 략)

- 제16조(자살예방의 날) ① 자살의 저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u>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u>.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자</u> <u>살예방의 날</u> 취지에 적합한 행 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u>4.</u> ∼ <u>6.</u> (현행 제2호부터 제4
호까지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세16조(자살예방의 날) ①
حا ۱
<u>자살</u>
예방주간으로 하며, 매년 3월을
자살예방의 달로 한다.
② <u>-</u> <u></u>
살예방의 날(자살예방주간 및
자살예방의 달을 포함한다)
<u>,</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
사 외에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
존중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
록 보건복지부장관은 별도로
자살예방기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